세 무 대 리 계 약 서

위임인(갑): (대표)

수임인(을): 대영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신 상 규

위 당사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업무]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보수】① 본 계약에 따른 기장대리보수는 월정 액 <u>금</u>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대리,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 등에 따른 보수는 제1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갑이 부담한다.

제3조【보수의 지급방법】보수지급방식은 아래 날짜에 법인통장[535501-04-051950(국민은행, 예금주: 대영 회계법인)] 으로 자동 이체하거나 대영회계법인 CMS계좌로 지급한다.

예금주	개인/법인	주민번호/등록(고유)번호	출금은행	계좌번호

제4조【보수지급의 지체】① 갑이 본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간】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무】갑은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 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을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8조【업무수행불능 및 책임】①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월정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므로 갑이 제공한 자료에 허위사항이 있거나 요구자료의 지연제시 또는 미제출로 인해서 장래 갑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 ③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을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해지】①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갑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가 불비 및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 ③ 을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그 시점까지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

제11조【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 한 후 1통씩 보관 한다.

(인)

년. 월. 일

갑 상 호:

대표자:

주 소:

을 상 호:대영회계법인

대표자:신 상 규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례통3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703